

러시아 4월 수출현안 · 수입제도 모니터링

|

수입제도 변경사항 / 수출현안 및 동향

1. (통관)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원산지 규정 확정

- 출처: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협의회 명령 №59 (2018.04.03.)

- 2008년에 설정된 원산지 규정을 현대화하고 유라시아경제연합 통합 원산지 규정을 확정함
 - 본 규정을 통해 원산지 판별이 어려운 경우의 수를 최소화 하고,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서류제출이 가능해짐
- 비역내산 재료이용 제품은 최대부가가가치가 발생한 곳을 원산지로 인정받게 됨
 - 최종산물 가격 내 비역내산 재료 가격 비중에 기반하여 원산지 결정 가능함. 단, 비역내산 재료 가격은 완제품 가격의 50%를 초과해서는 안 됨
 - 다음의 경우 유라시아경제연합위원회의 이사회는 명시된 원산지 규정의 기준이 아닌 특별 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
 - 세 번 변경
 - 해당 국가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여겨질 만한 생산 혹은 기술적인 작업이 필수요건을 충족한 경우
 - 부가가치비용이 정해진 비율을 초과한 경우
 - 비역내산 재료의 가격이 정해진 비율을 넘지 않은 상태에서 상품의 가격이 변한 경우
- 부가가치 백분율 및 비역내산 재료가격 비율 계산법은 다음과 같음
 - 부가가치 백분율 = $\frac{\text{공장인도가격}(FOB) - \text{비역내산 재료 가격}}{\text{공장인도가격}(FOB)} \times 100$
 - 제품 가공에 사용된 비역내산 재료가격의 백분율 = $\frac{\text{비역내산 재료 가격}}{\text{공장인도가격}(FOB)} \times 100$
- 국가 간의 전자 원산지 증명서 협약이 체결된 경우, 세관신고 시 전자시스템을 통해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
 - 원산지 신고서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뢰할 수 없는 정보와 그 이유에 대해 명시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음
 - 명시된 정보를 신뢰할 수 없거나 전자시스템 상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종이 문서형태의 원산지 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함

- 원산지 증명 서류에 요구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
 - 원산지 증명서는 기계·화학적 수단에 의한 위조로부터 안전한 수단을 이용하여 영어, 프랑스어 또는 러시아어로 작성 후 A4 규격 인쇄물의 형태로 상품의 발송 전후에 발행되어야 함
 - 증명서는 반드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함

1	원산지 국명
2	증명서 번호, 발급기관
3	수출자 혹은 제조자 명칭과 주소
4	목적지 국가명 혹은 상품 수취인 명칭과 주소
5	상품의 식별을 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설명
6	총 중량 및 (또는) 기타 양적 특성
7	(증명서가 상품의 수출국에서 발행된 경우) 원산지국에서 발행된 원산지 증명 문서 요건
8	증명서 발급에 관한 정보 (증명서 발급기관 인장, 담당직원 서명, 증명서 발행일)

- 위 항목은 최소 필수요구 항목으로서 추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음
- 증명서의 수정, 첨가 및 삭제는 원산지 증명서 발급국의 담당기관 인장과 담당 직원 서명으로 공인된 수기 혹은 인쇄 상 정정의 방식으로만 허용됨
- 정보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명서 상의 오타는 인증서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문서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함
- 원산지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 간 유효함

2. (기술규정) 농작물 종자 품질 측정 통합 방식 승인

- 출처: 유라시아경제위원회 협의회 명령 No.57 (2018.04.03.)

-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내에서 통용되는 농작물 종자 품질 및 파종특성 평가 방법 49개의 목록이 확정됨
 - 검사 대상 및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음

검사대상	검사항목
목화 종자	샘플링
사탕무를 제외한 농작물의 종자	순도 및 폐기율
채소 종자	수분
참외류 종자	발아율
사료용 구황작물 종자	생존력
사료용 양배추 종자	질병 감염성
사료용 희귀작물 종자	해충 피해 가능성
곡물 종자	
에센스오일용 작물 종자	

- 검사 항목의 검사방법은 GOST를 통해 규정하고 있음
- 유라시아경제연합 역내에서 통일된 종자 품질검사 규정을 통해 투명하고 공평한

검사가 가능해짐

- 유라시아경제연합 차원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을 포함한 모든 품종의 농작물 종자에 관한 법률안이 준비 중임
- 이러한 일련의 법률 작업을 통해 단일 종자시장 구성 및 역내 종자 무역 장벽 제거를 위해 노력 중임
- 유라시아경제연합 내 단일 종자시장이 형성은 위기이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
 - 카자흐스탄, 키르기즈스탄 등의 역내 국가들의 러시아 시장진입이 용이해지면, 경쟁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
 - 러시아 시장은 물론 역내국가로의 진출을 위해 검사항목을 중심으로 품질 차별화가 요구됨
-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됨

3. (수출현안) 러시아의 낙농 보호주의 대두

- 출처: 러시아 농업부

- 지속적인 우유 가격 하락으로 생존을 위협받은 러시아 낙농업자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있음
 - 러시아 농업부에 따르면, 올 4월19일에는 원유 가격이 20루블 밑으로 떨어져 2018년 한해 840억 루블 이상의 손실이 예상됨
- 현재 상황은 국내 생산량 증가와 효과적인 유제품 수입 관리 메커니즘이 부재에 기인함
 - 유제품 가공업자는 원유의 원산지보다 가격요소를 중시하여 식물성 유지를 이용한 생산을 위한 원료를 덤핑가격으로 수입하고 있음
 - 관세 위원회에 따르면, 2017년에 172톤의 가루우유가 수입되었고, 이의 20%에 해당하는 양이 밀수로 반입됐을 것으로 추정됨
 - 러시아 농업부는 가루우유 수입량의 70% 이상을 담당하는 벨라루스와 우유 공급에 대해 논의 중이며, 단일 유제품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
- 러시아 농업부는 국내 낙농업자를 보호를 위한 '낙농 보호주의'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제안함
 - 러시아 유제품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 6월 16일부터 유제품 라벨링 의무 프로세스가 도입될 예정임
 - 제품 내 원유 함량과 같은 구체적인 성분정보를 제공할 예정임
 - 전자 수의학증명서 도입으로 유제품의 이동과정과 유통망에 대한 정부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보임

- 유제품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치즈유사제품(Cheese-like Products)에 대한 규제가 요구됨
 - 2017년에 반입된 치즈유사제품은 15만 톤에 이르며, 이는 일반원유 수요를 감소시켜 겨울철 원유 가격을 20% 감소시킴
 - 법률상 치즈유사제품에 대한 정의가 없어 소비자보호국이나 동식물검역국의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
 - 수의학적 모니터링 도입, '우유와 유제품의 안전에 대한' 기술규정에 부합하는 가루우유 이용 제한 규정(버터 및 치즈 가공 시 가루우유 이용 제한 규정, 특정 유형의 유제품 생산에서의 식물성 유지 사용 제한) 형성과 기술규정 위반 시의 책임강화가 요구됨
- 러시아 낮은 원유가격과 정부차원의 낙농업 보호주의 정책은 수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임
 - 러시아 국내 원유가격 하락으로 수출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
 - 향후 국내 유통 유제품과 수입 유제품에 대해 특정 성분 이용 제한과 특별 기술규정 도입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임

4. (수출현안) 팜유 수입 증가에 따른 규제 요구

- 출처: 아그로뉴스(agronews.com) 2018.04.24.

- 유제품 가공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팜유의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
 - 2018년 1월~2월간 팜유 수입량은 전년대비 36.7% 증가하여 17만 톤에 달함. 올 2월에만 9만7천톤에 달하는 팜유가 수입됨
 - 팜유 수입 증가는 유제품 가공에 첨가되는 팜유의 양이 증가가 원인임
 - 해바라기유, 홍화유 혹은 목화유의 수입은 해당기간 전년대비 2.5배 증가하여 4만4천 톤에 이름
- 농업부는 팜유 수입 쿼터를 설정과 팜유를 비롯한 비유지방을 함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 성분정보표기를 의무화를 제안함
 - 그러나 팜유 이용을 제한이 기타 동물성 지방을 이용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됨
- 기타 첨가물로 가공한 유제품에 대한 수입 쿼터 설정 혹은 수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, 천연 유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보임
 - 유제품 가공 성분 표기로 인해 비유지방으로 가공한 유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 천연 유제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

5. (수출현안) 유기농 제품에 관한 법률 초안 국가두마 승인

- 출처: 러시아 농업부, 모스크바주 농무부, <https://agro.ru/news/>
- 4월 3일 열린 국가두마 본회의에서 농업부 차관 이반 레베데프가 제안한 ‘유기농 제품 생산’에 대한 법률 초안이 승인됨
 - 해당 초안은 유기농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제공함
 - 유기농법 재배 농가 등록을 비롯하여 유기농 재배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
 - 유기농 제품 마크 표기 허가 규정과 위반 시의 처벌을 규정함
 - 유기농 농법은 세계적인 추세로 179개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, 러시아 내에 국제표준에 따라 인증 받은 농산물 생산자는 약 70여명임
 - 해당 법안을 통해 일부 판매자들의 무분별한 ‘유기농’, ‘친환경적’, ‘바이오’ 등 용어 사용으로 가중된 소비자의 혼란과 신뢰 하락이 회복될 것으로 보임
- 향후 유기농 제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향후 러시아 유기농 제품 시장의 확대가 예측됨
 - 러시아내 유기농 제품 생산과 판매 규제 및 감시 시스템의 부재가 유기농시장 형성 및 육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
 - 러시아 유기농 제품 시장은 약 1억2천 달러이며, 인증서를 가진 유기농 제품의 90% 이상이 수입 제품임
 - 정부의 철저한 유기농제품의 품질관리와 위조 상품 관리를 통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추가 소비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
II

품목별 통관 일반사항 / 주의사항

1. (품목명) 일반사항

- 없음

2. HS code, 관세

- 없음

3. 기타 주의사항 및 관련 청 요구사항

- 없음

III

통관문제사례 관련(대응방안, 사유분석, 경쟁국산 등)

○ 없음